

2007-12-55

남북합의서 I

(2000년 이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

■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1994.6.28) 1-①-1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1994.7.2) 1-①-1

■ 남북고위급회담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1990.7.26) 1-②-1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1991.10.24) 1-②-4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1991.12.13) 1-②-4
-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보도 1-②-5
(1991.12.31)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1992.2.19) 1-②-5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②-6
(1991.12.13)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②-9
(1992.2.19)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1-②-11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1992.3.14) 1-②-12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②-12
(1992.3.18)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1992.5.7) 1-②-14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1-②-16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②-17
(1992.5.7)
-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1-②-19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1992.9.17) 1-②-21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1-②-22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1-②-25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1-②-27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9.17) · 1-②-34

■ 남북차관급회담

-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1995.6.21) ······ 1-③-1
-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서(1999.6.3) ······ 1-③-1

■ 남북조절위원회

- 7·4 남북공동성명(1972.7.4) ······ 1-④-1
-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 절차 에 관한 합의서 · 1-④-2 (1972.7.4)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 1-④-3 (1972.11.4)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1972.11.4) ······ 1-④-4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1972.12.2) ······ 1-④-6

[사회문화 · 인도]

■ 남북적십자회담

-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진행절차·의제에 관한 합의서>(1971.9.29) ······ 2-①-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간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합의문(1971.9.29) ······ 2-①-2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1972.8.11) ······ 2-①-4
-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 2-①-8 (1972.8.16)
 -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 합의문(1972.8.16) ······ 2-①-12
-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1972.8.25) ······ 2-①-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리용 절차에 관한 합의문(1972.8.25) 2-①-17
-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1972.8.30) 2-①-19
-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1972.9.14) 2-①-19
- 제4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1972.11.22) 2-①-20
-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 사이의 합의서(1974.5.22) 2-①-21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1985.8.22) 2-①-21
-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합의서 2-①-24
(1985.8.22)
-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2-①-28
(1997.5.26)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7.25) 2-①-31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8.3.27) 2-①-32

■ 남북체육회담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1991.2.12) 2-②-1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1991.2.12) 2-②-2
-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탁구연맹, 국제 및 아시아축구연맹에
보낼 편지에 관한 합의서(1991.2.12) 2-②-4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에 관한 합의서(1991.2.12) 2-②-7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1991.2.12) 2-②-9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 2-②-12
(1991.2.26)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2-②-17
(1991.2.27)

[기타 합의서]

■ 4자회담

-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관련 「4자회담 의장성명」(1997.12.10) … 3-①-1
-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공동 언론발표문(1998.10.24) …… 3-①-1
- 4자회담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1998.10.24) …… 3-①-2

■ 미·북 관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1993.6.11) …… 3-②-1
- 미북 기본합의문(1994.10.21) …… 3-②-2
-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2000.10.6) …… 3-②-5
- 미·북 공동코뮤니케(2000.10.12) …… 3-②-6

■ 군사정전협정 관련

-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 3-③-1
-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 3-③-1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7.27) …… 3-③-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문
제들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
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과전,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각기 예비
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
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합의한다.

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금
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다.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
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
회담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
께 노력한다.

1994년 6월 28일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부총리 겸 통일원장 이홍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	--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
급 예비접촉(94.6.28, 판문점)에서
합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
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
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
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0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 ①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2회의 단독회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 ②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3.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5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4.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 파견

- ① 쌍방은 경호, 의전, 통신, 보도

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13일부터 7월 16일(3박 4일)까지 평양에서 가진다.

이에 앞서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8일 오전 10시 관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7일 오전 10시 관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 ②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3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날 때까지 체류한다.
- ③ 남측의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왕래절차

- ①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

에는 명단을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6.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7.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1. 회담보도

- ①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2.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측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 총리급 예비접촉
남측대표 윤 여 준 북측대표 백 남 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담 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 날짜

제1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며, 제2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매차 회담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되 제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장급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회담 수행원과 취재기자

회담 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 형식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회담은 쌍방 대표단 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총리 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 기록

회담 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기록을 위해 조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10. 회담 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2. 신변안전보장

- ①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

안전보장각서를 회담 5일 전에 관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남북 왕래절차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관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 ④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공항)-평양(순안비행장) 사이를 직행한다.
- ⑤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
- 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 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17. 편의제공

-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 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송한호 단장 백남준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90.7.26, 판문점)에서 합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1991년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내용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조정과 문안 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을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1년 10월 24일
평양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보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3차례 진행되었다.

쌍방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판 문 점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2.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4. 남북 쌍방은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5. 남북 쌍방은 1992년 2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6. 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19일
평 양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
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
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
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
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
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
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
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
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

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	--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3, 서울)에서 채택

- 남측 : 1992.2.17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이 부서
- 북측 : 당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1991.12.24)에서 연형목 총리가 보고한후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91.12.26)에서 승인후 김일성 주석이 최종 비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 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목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8-21, 평양)에서 합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목

※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3차 대표접촉(91.12.31, 판문점)에서 타결, 가서명후 쌍방 총리가 교환·서명한 동 선언문 상호 최종 교환(92.1.21)

※ 남측 : 92.1.23 국무회의 의결, 북측 : 92.2.5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에서 승인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9, 평양)에서 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이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차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들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992년 3월 17일과 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2.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1992년 3월 18일에 상호 통보한다.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1992년 3월 14일
판문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3.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하며, 그 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서

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정원식	회담 대표단 단장 총리 형
---	---	----------------------------

※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
를 위한 제7차 대표접촉(92.3.14)
에서 합의·가서명 1차교환(92.3.17),
2차교환·발효(92.3.19)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 협의회를 둔다.
 -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 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③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④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 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의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한민국 정	수석대표 민총 원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리식연	단장 인민공화국 총리 형
-------------------------------	-----------------	---	------------------------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군사분과위원장 접촉(92.5.6-7, 서울)에서 타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 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정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 접촉(92.5.6, 서울)에서 타결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

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방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방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무원	총리
정원	식연	형묵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2.5.6-8, 서울)에서 서명·발효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회담에서 쌍방은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1992년 10월 15일(목)에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2. 각 공동위원회는 제1차 회의 개최일자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5일(목),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12일(목),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③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19일(목),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④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26(목),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3.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12월 21일(월)부터 12월 24(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1992년 9월 17일
평양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범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과·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과, 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과·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과·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 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국무정	회수민총원	담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정무원식	회담단장 인민공화국 총리 형무
--------------------------	-------	--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6-18, 평양)에서 합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 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행위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

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한민국 정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 석연	남북고위급회담 단장 인민공화국 총리 형
-------------------------------	---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6-18, 평양)에서 합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는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 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중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총리 형묵
---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6-18, 평양)에서 합의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 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

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한민국 국무총리 정원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정무원 식연형	단장 총리 총리 총리 총리
---------------------------------------	--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6-18, 평양)에서 합의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의 대표단은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북경에서 쌀 협력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제1차로 쌀 15만 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무상으로 한다. 남측은 본 합의를 서명·교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2. 남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하여 남측 선박으로 청진항, 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이 경우 북측 항구까지의 수송비는 남측이 부담하며 남측의 필요에 의하여 제3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 북측에 제 1차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시를 하지 않는다.
4.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남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북측에서는 조선 삼천리총회사로 한다.

5.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6. 남과 북은 1995년 7월 15일 북경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7.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995년 6월 21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원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차관 이석채 고문 전금철

*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제1차 북경회담 (1995.6.17-21)에서 합의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3차례 차관급(부상급) 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한다.

(4) 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

1999년 6월 3일

(1) 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

남측 당국 대표 북측 당국 대표
 국무총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특별보좌관 위원회 부위원장
 김보현 전 금철

(2) 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 당국회담을 개최한다.

(1)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합의한다.

(2) 회담장소는 1차 베이징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

(3) 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 시키고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

1. 직통전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한다.

2. 직통전화 설치장소

직통전화는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4.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한다.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7.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8.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 울 평 양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조직지도부장 김영주

1972년 7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1.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서명 교환했다.
2. 쌍방은 서로 비방증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1972년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마.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

<p>는 제반문제들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회의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p> <p>다.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다.</p> <p>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p> <p>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p> <p>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p>	<p>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p> <p>마. 남북조절위원회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p> <p>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p> <p>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p> <p>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2년 11월 4일</p> <p>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평양측 공동위원장이 후락부장 김영주부장</p> <p>※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72.11.2-4, 평양)에서 합의</p>
--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

1. 금번 회의에서는 쌍방간에는 각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2. 남북조절위원회 실무 기능을 조속히 완비하기 위해 단시일내 '간사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한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1972년 12월 2일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진행절차의제에 관한 합의서

1. 예비회담 장소

- 가. 예비회담장소는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 나. 회의장내 시설은 쌍방 대표단의 실무자간에 협의 해결한다.

2.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 가. 대한적십자사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자유의 집'에, 그리고 북한적십자회는 '관문각'에 각각 설치한다.
- 나. 쌍방은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 왕복전화를 가설한다.
- 다. 남북적십자간 문서전달을 필요로 할때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간의 직통전화로 연락을 취한 후, 쌍방 근무자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한다.
- 라. 상설 '회담연락사무소'에는 쌍방이 각기 2명의 근무원을

배치하되, 평일은 09:00부터 16:00,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3. 수행원과 배치문제

예비회담의 수행원 수는 장소관계로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배치는 대표단 좌석 뒤에 임의로 한다.

4. 회의 기록과 확인방법

예비회담의 회의기록은 각기 하되, 쌍방 공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확인토록 한다.

5. 발언 방식

예비회담에서의 발언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석대표가 발언하되, 필요할 시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여타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6. 회담의 공개여부

- 가. 예비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를 볼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나.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회의 장내 취재를 허용하며, 쌍방 기 사실에는 확성기를 설치한다.

7. 차기 예비회담 일시

차기 예비회담 일시는 당 회담종료시 또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합의 결정한다.

8. 합의내용의 공표문제

매차의 예비회담에서 합의에 도달된 사항에 관한 공표는 '합의된 사항'만을 각각 문서로 작성 교환하여 서로 확인한 후, 합의내용이 일치되면 각기 공표한다.

9. 본 회담 의제 및 의순

- 가. 본 회담의 장소
- 나. 본 회담의 일시
- 다. 본 회담의 의제
- 라. 본 회담의 대표단 구성
- 마. 기타 본 회담의 진행절차

1971년 9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예비회담
수석대표 김연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간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합의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과 남조선적십자사 대표단간에는 예비회담의 성과적운영을 위한 절차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예비회담장소는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다. 회의장안의 시설은 쌍방대표단 실무자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 2) 회의기록은 쌍방이 각기하되 속기 및 녹음하고 대조확인 한다.
- 3) 예비회담 다음회의날자는 당일 회의 마감에 확정할 수도 있고 즉석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쌍방 상설전화연락소 연락원들사이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한다.
- 4) 쌍방은 대표단사이의 연락사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통전화를 《판문각》과 《자유의집》에 각각 설치한다.

련락사무는 이 직통전화를 리 용하며 쌍방적십자단체 사이의 문서전달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쌍방련락원이 직통전화로 사전련락을 취한후 중립국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 한다.

- 5) 예비회담의 수원수는 쌍방이 각기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 6) 예비회담대표단의 발언은 단장과 수석대표가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대표들이 발언할 수도 있다.
- 7) 예비회담을 정속한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기자들은 회의시작전까지 회의실내에서 취재하고 회의가 시작되면 밖으로 나간다.
기자의 취재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휴게실 안에 예비회담의 토의내용을 취재할 수 있도록 확성기를 설치한다.
- 8)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도는 쌍방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발표는 공동으로 할수도 있고 각기 할수도 있다.

2. 본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토 의문제와 그 순차를 다음과 같 이 확정한다.

- 1) 본회담의 장소문제
- 2) 본회담의 시일문제
- 3) 본회담의 의정문제
- 4) 본회담대표단의 성원문제
- 5) 본회담의 기타 절차문제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적 십 자 회 대 표 단
단 장 김 태 회

1971년 9월 29일
판 문 점

※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간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합의문」은 1971년 9월 29일 제2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합의 (전자는 남측, 후자는 북측)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

1972년 8월 11일 개최된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 절차 및 본회담 개최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각각 초청자의 입장과 원칙에서 상대측의 대표단(대표단에는 대표, 자문위원 및 수행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과 기자단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타 모든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1. 본회담 첫 회의 문제

제1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는 첫번 회담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상호 초청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2. 신변보장

- 1)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 중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 2)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 중 그들과 문서, 사진, 필름, 녹음 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필요한 휴대품들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관계당국이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신변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 전원을 매번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상호 왕래 개시 1주일 전에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교환한다.

3. 왕래절차

- 1) 쌍방은 자기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명단(성명, 성별, 직책)과 사진을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후 변동되는 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문서로 넘긴다. 상대측에 넘기는 왕래 인원 명단에는 적십자사 책임자가 서명한다. 추후 변동되는 명단에는 위임에 의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할 수 있다.

- 2) 대표는 자기측 적십자사 책임자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자문위원, 수행원 및 기자단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 3) 쌍방의 대표단과 기자단은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그 통과 및 접수시간은 쌍방이 협의 확정한다.
- 4)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

- (1) 쌍방은 쌍방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한 업무를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담당 수행하게 하며, 이들의 명단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한다.
- (2)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일체의 업무는 쌍방 적십자사가 전담 수행한다.
- (3) 쌍방의 모든 차단소들은 왕래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 (4) 상대측 인원을 접수할 때에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가 있는 구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초청측이 상대측으로부터 3일전에 넘겨받는 명단에 의거하여 상대측 인원들의 신분증명서를 대조 확인한 후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초청측은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한 접수된 인원명단을 상대측에 넘겨준다. 돌아갈 때에는 접수된 인원명단에 의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4.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1) 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정 및 회담일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2)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은 각각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5. 표 지

- 1) 쌍방의 대표단은 각기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을 착용한다.

- 2) 쌍방의 기자단은 자기측 적십자사의 회장과 자기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색 바탕에 '기자'라는 글자를 박은 완장을 착용한다.
- 3) 쌍방의 교통수단에는 적십자기만 달도록 한다.

6. 장비 및 소지품

- 1) 쌍방은 무선송수신기를 제외한 통신연락, 회의기록, 문건작성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기술기재와 구급약품, 간단한 휴대용 의료기구, 사무용품 및 기타 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2) 쌍방 인원들은 상대측 지역에 체재 중의 생활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 출판물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3) 쌍방 인원들은 무기, 폭발물 등 유해위험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7. 교통

쌍방은 각기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교통수단을 보장한다.

8. 통신

- 1) 쌍방은 대표단 및 기자단을 위하여 남북 사이에 총20회선의 유선전신 전화선을 보장한다.
- 2) 쌍방은 본회담의 진행과 관련한 통신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단체 중앙기관 사이에 직통전화 2회선을 상시 개설하며, 매차의 회담 기간에는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1회선은 회담장, 1회선은 숙소)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선들을 판문점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 4) 남북 사이에 연결되는 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통신기술 실무자 간에 협의한다.
- 5)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9. 회담장 외의 활동

쌍방은 체재기간 중 상대측 인원들을 각종 참관에 안내할 수 있다.

10. 회담장 시설

- 1) 회담장 시설은 초청측에서 회담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며, 회담장에서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 2) 초청측은 매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탁자 양끝 중심에 적십자기를 놓는다.

11. 회의기록

- 1) 쌍방은 회의기록을 각기 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 2)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 기관에 중계할 수 있도록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한다.

12. 회의공개 여부

- 1)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쌍방 합의시 공개로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본회담의 첫날 회의는 공개로 한다.

13. 보도진 문제

- 1) 쌍방은 회담 취재에 필요한 내신 보도진의 수를 20명으로 한다.
- 2) 쌍방은 매차 회담시 외신기자들을 초청측이 초청하며, 외신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회담취재편의를 제공한다.
- 3) 쌍방은 보도에서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4. 회담 운영 형식

- 1)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다.
- 2) 회의발언은 수석대표가 하되, 필요시에는 여타 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 3) 쌍방은 자문위원의 발언 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기로 하였다.

15.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쌍방은 합의문건을 공동으로 작성 서명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16. 편의제공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
자단의 체재기간 중 숙식, 교통, 통
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 쌍방은 회담을 위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수를 각각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내신보도진 20명으로 한다.

18. 본회담 일시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
일 오전 10시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한다.

1972년 8월 11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적십자회 대 표 단
수석대표 김 연 주 단 장 김 태 희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남
북간 전신전화 가설 및 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72년 8월 16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통신 기술실무
자 회의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간 회선의 용도별 분배

가. 대표단용

- (1) 쌍방적십자사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회선 2회선
- (2) 상대방 지역에 위치한 대표
단의 회담장소 및 숙소와 자
기측 적십자사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각각 1회선 및 인
쇄전신회선 각각 1회선
- (3)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
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
측 적십자 기관에 중계할 수
있는 녹음회선 2회선
- (4) 자문위원 및 수행원이 상대
측에 위치한 자기측 대표단
숙소와 기타 장소에서 자기
측 지역간에 통화할 수 있는
전화회선 1회선

나. 기자단용

상대측 지역에 위치한 기자단 숙소 또는 회담장 기자실에서 자기측 지역간의 통신수단별 회선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전화회선 : 3회선

*숙소, 회담장 또는 초청자측 지역내의 활동 또는 체재하는 장소에서 자기측(서울 또는 평양)과 통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인쇄전신회선 : 2회선(회담장 1회선, 숙소 1회선)

(3) 사진전송회선 : 1회선(회담장 및 숙소)

(4) 모사전신회선 : 1회선(회담장 및 숙소)

(5) 방송회선 : 2회선(회담장 및 숙소)

다. 보수용

상대방 지역에 위치한 대표단 숙소와 자기측 반송기계실간의 연락 전화 회선 1회선과 인쇄전신 1회선

2. 남북회선 통신방식

남북회선 구성을 판문점에서 상호 접속하되 2선식 음성급 회선으로 하며 회선의 기술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호방식 : 16-25헬즈 75볼트

나. 음성전화 회선의 잡음 : -50 디비이하

다. 유효음성주파수 대역 : 0.3-3.4킬로헬즈

라. 잔유손실주파수 편차 : 시,시,아이,티,티 2/5곡선에 적합토록 함.

마. 잔유손실(800헬즈에서)

(1) 서울-평양반송단국간 : 8.7- 12.8 디비 이내

(2) 서울-평양가입자간 : 20디비 이내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손실은 상호 국제기준치 이내로 보장한다.

바. 음성회선의 동기주파수 편차 : ±2 헬즈 이내

사. 케-블 절연저항 : 킬로미터 당 10.000 메그옴 이상

3. 남북회선의 접속

서울-평양간 보장된 전신전화 20회선의 회선번호는 아래와 같이 하며 「자유의 집」과 「판문각」간의 사용 케-블심선은 기수회선은 북한 적십자사측이 포설한 것을 사용하며 우수번호는 대한적십자사측이 포설한 것을 사용한다.

회선번호	용도	4. 전신전화용 단말기기
남북 1번선	쌍방중앙기관직통전화 회선 (1)	가. 초청자측에서 전화기와 사진 전송기는 제공한다.
남북 2번선	쌍방중앙기관직통전화 회선 (2)	나. 필요한 단말기기중 규격이 합치되지 않는 아래 단말기기는 상호 휴대할 수 있다.
남북 3번선	대표단과 자기측 중앙기관간 직통전화회선 (회담장)	(1) 반송전신단국장치
남북 4번선	대표단과 자기측 중앙기관간 직통전화회선 (숙소)	(2) 인쇄전신기
남북 5번선	자문위원 및 수행원이 사용할 전화회선	(3) 모사전신기
남북 6번선	대표단용 인쇄전신회선(1)	(4) 기타 필요한 통신장비
남북 7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1)	다. 단말기기에 사용되는 전원은 피초청측의 요구에 따라 초청측에서 필요한 전원을 제공하며 평양회담시는 교류 100볼트 ±10% 60ヘルズ를 제공하며 서울회담시는 대표단실과 기자실에는 별도로 교류 220볼트 60ヘルズ로 제공한다.
남북 8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2)	
남북 9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3)	
남북10번선	통신운용을 위한 보수용 전화연락회선	
남북11번선	회담용 녹음회선 (1)	
남북12번선	회담용 녹음회선 (2)	
남북13번선	방송 중계용회선	
남북14번선	방송 연락용회선	
남북15번선	모사전신회선	
남북16번선	기자용 인쇄전신회선 (1)	5.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 전화 선로들의 연결
남북17번선	사진전송회선	가. 판문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신 선로는 시외케-블로 하며 쌍방이 각각 20회선이상 포설한다.
남북18번선	대표단용 인쇄전신 회선 (2)	나. 통신케-블의 포설경로는 쌍방이 현지에서 합의 결정한다.
남북19번선	기자용 인쇄전신회선(2)	다. 통신케-블의 포설공사는 공동으로 실시한다.
남북20번선	통신운용을 위한 전신 연락회선	

라. 통신케-블의 포설공사가 끝나면 심선번호를 대조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6.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회선의 기술운영

가. 1972년 8월 18일 아침 10시부터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통하여 서울-평양간의 회선번호, 가입자명을 대조확인하고 잔유손실측정, 신호시험, 잡음측정 및 잔유손실, 주파수측정을 하며 그후 3일간 회선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한다.

나.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회선과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의 시험은 회담기간중은 매일 아침 07:00-08:00사이에 잔유손실 측정과 신호시험을 하며 평상시는 09:00에 시행한다.

다. 대표단 및 보도용 통신회선들은 매차의 회담기간만 사용하며 그의 측정시험은 매일 아침 04:00-06:00 사이에 한다. 이 회선들은 회담시작 2일전 10시에 지정된 지점에 연장하고 서울과 평양간 전화회선의 신호시험과 잔유손실 측정시험을 한다.

라. 초청측이 보장하는 통신시설들은 초청측이 시험을 하고 상대측에 넘겨주며 쌍방이 휴대하는 시설과 초청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시설들은 회의시작 1시간 전까지 자기측과의 시험을 끝낸다.

마. 쌍방은 각기 자기관할지역의 전신전화 회선의 정상특성을 유지토록 보장한다. 만약 자기관할지역의 통신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이 경우에도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와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바. 판문점에서 전신전화 회선이 고장일 경우에는 우선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 혹은 적십자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쌍방 기술실무자들의 합의하에 예비선으로 바꾸며 고장수리 작업을 한다.

7.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회선을 가설하기 위한 공동 작업시일은 1972년 8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8. 쌍방통신기술 실무자간의 합의 하에서만 이상의 제반조항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쌍방 통신기술자는 이상에서 합의한 8개항이 남북적십자사간의 본회담 진행을 위한 통신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1972년 8월 16일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 회의
대한적십자사 통신기술 실무자 대표
박 호 립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 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사이의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에서는 본회담 진행과 관련한 통신을 일상적으로 신속정확히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간(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선(20회선)의 용도별 분배와 구성방식

1)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의 용도별 분배

(1)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2회선

(2) 회담기간 상대측 지역에 가 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1회선은 회의장, 1회선은 숙소) 2회선

(3) 회의기록을 위한 녹음중계선 2회선

(4) 대표단과 자문위원용 3회선 그중

- 대표단과 자문위원들이 사용할 남북간 교환직통전화 회선 1회선

- 대표단용 인쇄전신선 2회선

(5) 보도 및 기자용 9회선 그중

- 방송원선 1회선

- 방송지휘선 1회선

- 사진전신선 1회선

- 모사전신선 2회선

- 인쇄전신선 1회선

- 남북간 교환직통선... 3회선

(6)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
 ...2회선

그중

- 전화연락선 1회선
- 전신연락선 1회선

2) 유선전신전화회선의 구성방식
 쌍방은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을
 적십자 판문점 연락대표부들이
 있는 구역(이하 판문점이라고
 한다)에서 2선식으로 구성하며
 이 모든 회선들에 저주파 신호
 세력을 전송한다.

3) 쌍방은 판문점에서 연결하는 통
 신케블의 심선번호, 그 번호에
 따르는 유선전신전화회선명과
 회선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선 번호	회 선 명	우리측케블 심선번호	상대측케블 심선번호
1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1	
2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1
3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회의장)	2	

회선 번호	회 선 명	우리측케블 심선번호	상대측케블 심선번호
4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중앙 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숙소)		2
5	대표단과 자문위 원들이 사용할 남 북간 교환직통회 선	3	
6	대표단용 인쇄전 신선		3
7	기자용 남북교환 직통회선	4	
8	기자용 남북교환 직통회선		4
9	기자용 남북교환 직통회선	5	
10	통신운영을 위한 전화연락선		5
11	회의기록을 위한 록음중계선	6	
12	회의기록을 위한 록음중계선		6
13	방송원선	7	
14	방송지휘선		7
15	모사전신선	8	
16	모사전신선		8
17	사진전신선	9	
18	대표단용 인쇄전 신선		9
19	기자용 인쇄전신선	10	
20	통신운영을 위한 전신연락선		10

2.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적 특성, 쌍방은 각기 자기측 관할 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적 특성을 공인된 기술기준치로 보장한다.

- 1)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화회선들은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치를 보장한다.

유효전송주파수대역 0.3~3.4KHZ
 동기주파수의 편차 $\pm 2\text{HZ}$
 전송준위 800HZ에서 -5db~
 -10db

잡음준위 -50db 이하

호출신호세력 16~25HZ/75V
 전화회선의 잔류감쇠(평양-서울간) -8.7db~-12.8db

케블회선의 절연저항 10000메그옴 /KM이상

- 2) 쌍방은 통신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 사진전신기

원통회전속도 : 60, 90, 120회/분

동기주파수 : 1020HZ

협동계수 : 352, 264

원통회전방향 : 오른쪽회전

변조형식 : 진폭변조, 주파수 변조

3.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선로들의 연결

- 1) 판문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신선로는 시외케블로 하며 쌍방이 각각 20회선이상 넘겨준다.
- 2) 통신케블의 공사로정은 쌍방이 현지에서 합의확정한다.
- 3) 통신케블을 늘이는 공사는 공동으로 한다.
- 4) 통신케블을 늘이는 작업이 끝나면 심선번호를 대조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4.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회선의 기술운영

- 1) 1972년 8월 18일 아침 10시부터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통하여 평양-서울간의 회선번호, 가입자명을 대조 확인하고 잔류감쇠, 주파수 특성, 잡음준위의 측정과 신호시험을 하며 그후 3일간 회선의 정상성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한다.

- 2)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회선과 통신

운영을 위한 연락선은 매일 아침 9시(본회담기간에는 7시~8시)에 잔류감쇠측정과 신호시험을 한다.

- 3) 대표단 및 보도용 통신회선들은 매차의 회담기간만 사용하며 그기간 측정시험은 매일 아침 4시~6시 사이에 한다. 이 회선들은 회담시작 2일전 10시에 제정된 지점에 연장하고 평양-서울간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의 잔류감쇠측정과 신호시험을 한다.
- 4) 초청측이 보장하는 통신설비들은 초청측이 시험을 하고 상대측에 넘겨주며 쌍방이 휴대하는 설비들과 초청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설비들은 회의시작 1시간전까지 자기측과의 시험을 끝낸다.
- 5) 쌍방은 각기 자기관할지역의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의 정상성을 보장한다. 만약 자기관할 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에 대한 보수정비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와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은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 6) 판문점에서 유선전신전화회선들이 고장일 경우에는 우선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 혹은 적십자 판문점협력대표부를 통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쌍방 기술실무일군들의 합의하에 예비선으로 바꾸며 고장퇴치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5.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전신전화선을 가설하기 위한 공동작업 시일은 1972년 8월 17일 오전 10시로 한다.
6. 이상의 제반조항들은 쌍방 통신기술실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 서만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쌍방 통신기술일군들은 위에서 합의한 문제들이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을 위한 통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남북간의 련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서울 또는 평양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24시간 운용한다.

4. 첫 통화

본 통화의 첫 통화는 1972년 8월 26일 10시에 한다.

5. 기술적 보장 및 고장수리

본 회담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보장 및 고장수리는 1972년 8월 16일의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위한 통신기술실무자회의 합의에 따른다.

6. 유 효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1972년 8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위임에 의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 책임자 최 동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리용 절차에 관한 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는 예비 회담 제25차회의 합의에 따라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설치하는 직통전화 리용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사이의 본 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쌍방 중앙기관사이에 서와 대표단 사이에 일상적으로 련계를 가지기 위하여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한다.)를 설치 리용한다.
2. 직통전화기는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직통전화는 쌍방적십자단체 책임자 또는 대표단들이 각각 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들이 임명하는 3명의 전화근무자들이 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들이 임명하는 3명의 전화근무자들이 리용통화한다.

우에 지적인 통화자들의 명단을 호상 통보한다.

3. 직통전화는 매일(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리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우에 지적인 기간과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대표단이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24시간 계속 리용한다.

4. 직통전화는 1972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통화를 개시한다.

5. 직통전화의 기술적 시험과 고장수리대책은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무자회의 합의문>에 준한다.

6. 본 합의문은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날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가 없이는 상기조항을 수정보충 또는 폐기할 수 없다.

1972년 8월 25일

판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판문점련락대표부 책임련락대표
출

※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리용절차에 관한 합의문」은 1972.8.25, 남북적십자사 연락관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제시한 합의자료로서 전자는 남측, 후자는 북측의 것이다.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 쌍방 대표단은 1972년 6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적십자에 비회담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를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확인하고 이를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한다.

-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2. 쌍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 해결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1972년 8월 30일
평양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수석대표 이 범 석 대표단 단장 김 태 희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

2.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1972년 9월 14일
서울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단장 김태희
수석대표 이법석

제4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쌍방은 197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설치한다.
2.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은 따로 토의·결정한다.
3.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그밖의 기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 토의·결정한다.

1972년 11월 22일
서울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김달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한시혁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 사이의 합의서

쌍방 적십자회담 대표들은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쌍방 적십자대표들의 접촉을 끝내고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단 교체수석대표(부단장)를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를 가진다.

둘째, 실무회의에서는 본회담 의제에 대한 예비적 토의를 진행하며 동시에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해결한다.

셋째, 실무회의는 본회담이 다시 열릴 때까지 진행한다.

넷째, 실무회의 날짜, 구성, 운영 절차 문제는 따로 토의한다.

1974년 5월 22일

판 문 점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김 달 슴 대표 조 명 일

※ 제6차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
(74.5.22, 판문점)에서 합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년 8월 22일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대한 적십자사측은 '남북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한다.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사 중

양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 1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한다.
- (2) 예술공연단(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한다.
- (3)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한다.
- (4)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한다.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 시기는 9월 20일~9월 23일(3박 4일)로 한다.

5. 방 문 지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6. 상봉의 주선과 범위

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차외기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 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나. 공연회수는 총 2회로 한다.

8. 공연내용

가. 공연은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다.

9. 공연 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 답사

가. 공연 프로그램은 방문 3일 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 인원 2명과 공연기술 인원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 답사토록 한다.

10. 공연시간

120분 정도로 한다.

11. 신변안전보장

방문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12. 수송 및 통신

가. 판문점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방문기간 중 서울평양 간 행낭을 1일 2회 운용한다.

다. 방문기간 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20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14.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에 따른다.

15. 방문자 명단 통보 시기

가.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나.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16. 고향방문자 명단 작성 양식

가. 고향방문단 명단의 방문자 난에는 방문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방문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 난에는 방문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질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17. 예술공연단, 취재기자단, 지원인원 명단작성양식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18. 방문자의 표지 및 증명서 소지

가.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지원인원은 적십자회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한다.

나. 기자는 방문단 표지 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관례를 준용한다.

다. 방문자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19. 체류일정

방문7일 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결정한다.

20. 기타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 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나.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한다.

다. 초청측은 공연개막 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마.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1985년 8월 22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	회담
수석대표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송영대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합의서

북남적십자 실무회담대표들은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방문단의 명칭과 구성

- ① 쌍방 적십자단체 책임자가 인솔하는 적십자 예술단, 고향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 대로 부르되 북측은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이라고 한다.
- ② 방문단 구성은 적십자단체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고 예술단 50명, 고향방문단 50명, 기자단 30명, 수행일군 20명 총 151명으로 한다.

2. 방문단의 방문지, 체류기간 및 방문시기

- ① 방문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로 하며 상대측 지역 체류기간은 3박 4일로 한다.
- ② 방문단은 동시에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며 방문날자는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 사이로 한다.

3. 방문단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

1) 예술단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

- ① 예술단의 공연내용은 민족적인 가두를 기본으로 하며 상대측을 비방하거나 자극하는 내용은 삼가한다.
- ② 초청측은 공연시설이 완비된 장소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 ③ 공연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 ④ 공연회수는 2회로 한다.
- ⑤ 예술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와 기술기재, 조명장치 등은 공연자측에서 가지고 갈수도 있고 상대측 시설을 리용할 수도 있다.
- ⑥ 공연장소를 사전에 료해하기 위하여 2명의 적십자일군의 안내하에 전문일군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을 방문한다.
- ⑦ 공연내용 소개는 각기 초청측의 의사를 존중한다. 다만 극장에서 공연소개는 상대측을 비방, 자극하지 않는 원칙에서 공연측이 공연종목을 소개할 수 있다.
- ⑧ 공연안내장(공연프로그램)은 공연자측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관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⑨ 초청자측은 공연자측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원들과 기타 로력적방조를 제공한다.
- ⑩ 초청자측은 공연개막전에 공연할 무대에서 사전에 연습할 수 있도록 공연자측에 편의를 제공한다.

⑪ 쌍방은 공연종목을 방문 3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 주며 초청측은 이에 준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2) 고향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문제

① 방문대상은 평양과 서울에 고향을 둔 당사자들을 위주로 한다.

② 고향방문단 성원들의 상봉 대상에는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 친척의 경우는 방계 8촌, 처, 외권 4촌으로 하며 그밖에 본인이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시킨다.

③ 쌍방은 적십자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방문자들의 희망대로 모든 성의를 다하여 연고자들을 찾아주며 그들이 상봉의 기쁨을 나눌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보장한다.

④ 고향방문단 성원들에 대한 자료는 출발하기 10일 전에 판문점련락대표부를 통하여 초청측에 넘겨준다.

고향방문단 성원으로 상대측에 갈 대상에 대한 자료에는 사진과 함께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부모의 성명, 갈라지기 직전의 주소, 직장직위를 명기한다.

상봉대상에 대한 자료에는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방문자와의 관계, 헤어질 당시의 주소와 직업을 명기하며 그 밖에 찾는 데 필요한 내용을 첨부한다.

4. 안전보장 및 편의보장 문제

① 방문단과 그 가족, 친척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각기 관계당국이 안전담보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며 그 문본을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으로 넘어가기 7일전에 판문점련락대표부를 통하여 방문단측에 넘겨준다.

② 판문점을 넘어선 순간부터 방문단성원들의 숙식, 교통, 의료봉사 등 일체 편의는 적십자회담때와 같이 초청자측이 책임지고 무료로 보장한다.

- ③ 방문단의 상대측 지역 체류기간 통신은 적십자회담때와 같이 평양-서울 직통전화를 리용한다.
- ④ 방문단의 상대측 체류기간 행낭운반은 초청자측에서 매일 1-2회 정도 보장한다.
- ⑤ 초청측은 기자들이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취재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보장한다.

5. 기타절차문제

- ① 방문단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기타 절차는 적십자회담 때와 같이 한다.
- ② 방문단성원들은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며 적십자회장을 단다. 기자들은 그밖에 기자완장을 낀다.
- ③ 적십자단체 책임자일행과 예술단, 기자들의 명단은 방문 3일전에 판문점련락대표부를 통하여 상대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방문단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④ 방문단의 상대측지역 체류와 관련한 일정협의는 방문 1주일전에 한다.

1985년 8월 22일

판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단장의 위임에 의하여
대표 박 영 수

※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1차:1985.7.15, 2차:7.19, 3차:8.22)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자는 남측, 후자는 북측의 것이다.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7년 5월 3일부터 26일 사이에 북경에서 2차례의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 구호물자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쌍방은 그동안 북측 주민들에 대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해온 구호활동을 평가하고, 구호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연맹과의 협조하에 남북간에 직접 인도·인수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절차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가.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 ① 구호물자의 수량은 1차적으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 톤 정도로 한다.
- ② 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으로 한다.

나. 구호물자의 전달시기

- ① 제1차 지원분은 1997년 7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 ② 제1차 지원분 인도 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

- ① 남측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구호물자를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인도·인수 장소까지 운반한다.
- ② 물자수송량은 편의상 회당 육로의 경우 화차 20량 이상, 해로의 경우 1천톤 내지 2천톤 이상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인도인수 지점은 육로의 경우 신의주, 남양, 만포로 하고,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흥남항으로 한다.
- ④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인도·인수 지점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다.

3. 물자전달 방법

- ①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쌍방의 적십자 인원들이 인도·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과 품질 등을 확인하고 인도증과 인수증을 서명·교환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육로수송의 경우 수량확인 은 화차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남측 적십자사의 인도인원은 2명 내지 3명으로 한다.
- ③ 인도·인수시에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4. 지정전달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 지역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대상자에게 그 물자를 전달하도록 한다.

5. 분배과정 입회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북측지역내 분배과정 입회를 보장한다.

6. 편의보장

- ①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 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숙식·차량안내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기록협조

북측은 구호물자 인도·인수장소에서 남측 적십자인원들의 사진촬영을 협조, 보장한다.

8.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관계당국의 안전보장각서를 남측에 사전 전달한다.

9.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지

- ① 남측의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지를 부착한다.
- ② 남측 선박의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적십자 깃발만을 단다.

10. 물자포장

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11. 검수 및 검역

검수 및 검역 절차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행·처리한다.

12. 수송계획에 대한 사전통보

- ① 남측은 수송일시, 품목 및 수량, 수송차량과 선박의 제원, 선적 수량, 수송인원 명단 등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하역항과 하역 준비상태 및 기타 하역에 필요한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 ③ 수송물량 및 수송수단의 사정에 따라서 통보 일정을 쌍방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13. 수송조건

남측은 운임, 보험료 등 북측 하역 지역 도착시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과 체선·체차료, 조출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14. 분쟁해결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 적십자 대표단간에 협의·해결한다.

15.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16. 발 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7년 5월 26일

대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	십	자
적	십	자
회	회	회
남북적십자	대표적십자	북남적십자
대표적십자	대표적십자	대표적십자
남	북	북
측	측	측
대	대	대
표	표	표
단	단	단
수석대표	이	병
	웅	단
	장	백
	용	호
	호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경에서 대표 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의 구호물자 2차분의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쌍방은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의 1차분 구호물자가 북측에 인도·인수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2차분의 지원수량·품종·시기와 합의서 보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차분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 ① 구호물자의 수량은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톤 정도로 한다.
- ② 구호물자의 품종은 옥수수 등 식량을 위주로 한다.
- ③ 제2차 지원분은 1997년 9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2. 물자 검수

구호물자의 검수는 육로의 경우 화차량 기준, 해로의 경우 선상인도 방식으로 하며 국제관례에 따른다.

3.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 ①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 대표들이 남측의 구호물자가 전달된 지역에 대해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물자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품목, 수량 등을 명기)을 구호물자 전달 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4.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쌍방이 1997년 5월 26일 합의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1997년 7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남적십자 대표접촉
남측 대표단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웅	단장 최경린

〈양해사항〉

1. 해로 수송시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은 육지에서 하도록 한다.
2. 인도·인수장면, 하역장면, 검수장면에 대해 육로, 해로 모두 사진촬영과 함께 녹화촬영도 보장한다.
3. 구호물자 수송계획 및 분배결과 통보는 적십자 남북연락대표를 통해 문건으로 전달한다.
4.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방문을 위해 필요한 방문사증은 심양주재 북측 총영사관에 서도 발급한다.
5. 자연재해, 휴일 등으로 수송기일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인도·인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남측은 북측에 전달되는 물자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1997년 7월 25일

대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	십	자
적	십	자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남적십자 대표접촉	
남측 대표단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웅	단장 최경린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한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1998년 3월 25일부터 1998년 3월 27일까지 북경에서 대표접촉을 가지고 북측에 대한 남측의 제3차 구호물자 직접 전달에 따르는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구호물자의 규모와 품종 및 인도·인수시기

- ① 규모는 1차 및 2차 지원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 ② 품목은 밀가루를 기본으로 한 식량과 식용유·소금 등으로 하고, 이외에 비료도 포함된다.
- ③ 제3차 지원물자는 1998년 5월 말까지 인도·인수한다.

2.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지점

인도·인수지점으로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진항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분배결과 통보

구호물자의 분배결과는 매회 전달후 2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며, 통보문건에는 도·사·군 단
위까지 구체적 분배내역을 명시한다.

4.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쌍방이 이미 합의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년 5월 26일자)와 「남
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1997년
7월 25일자)는 효력을 가진다.

1998년 3월 27일

대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	십	적
십	자	십
자	사	자
회		회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남적십자 대표접촉	
대 표 단	대 표 단	
수석대표 이 병 응	단 장 최 경 린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
달 절차에 관한 양해사항〉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남
측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
은 연맹의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1998년 3월 27일

대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	십	적
십	자	십
자	사	자
회		회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남적십자 대표접촉	
대 표 단	대 표 단	
수석대표 이 병 응	단 장 최 경 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 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약자: KOR)로 한다.

2. 선수단 단기

-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한다.
-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선수 선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한다.

5. 선수단 구성

- 가.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한다.
- 나. 국제탁구연맹 규칙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다. 단장은 북측에서 맡는다.
- 라.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6. 선수 훈련

- 가. 대회 현지에서 실시한다.
- 나. 훈련에 참가할 단일팀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다. 훈련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 참가시까지 실시한다.

7. 선수단 경비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8. 단일팀 공동추진 기구

- 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 다.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 마.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4)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 사항
-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9.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문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충식 단장 김형진

※ 제4차 남북체육회담(91.2.12, 판문점)에서 합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8항「단일팀 공동추진기구」규정에 의거,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 능

- 가.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선정에 관한 사항
 - (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요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라)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4) 대회개최 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탁구협회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탁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탁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2. 구 성

가. 실무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3. 운 영

가. 실무위원회는 탁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 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 실무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향 의제로 한다.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바.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4.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 문 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여 위 임 에 의 하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단 장 김 형 진

※ 제4차 남북체육회담(91.2.12, 판문점)에서 합의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탁구연맹, 국제 및 아시아축구연맹에 보낼 편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탁구연맹, 국제 및 아시아축구연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2월 12일 판문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여 위 임 에 의 하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단 장 김 형 진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참가시킨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곧 쌍방의 경기단체간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쌍방의 경기단체들은 단일팀 참가에 따르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 및 아시아연맹과 협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일팀의 명칭은 영어로『KOREA』(약자 : KOR)로 하고, 선수단 단기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선수단 단가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 대회에 남북단일팀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김 유 순

『오기무라 이치로』
국제탁구연맹회장 귀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참가시킨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쌍방 탁구협회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우리 탁구협회들은 필요하다면 동 대회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데 따르는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 연맹과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단일팀의 명칭은 영어로『KOREA』(약자 : KOR)로 하고, 선수단 단기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선수단 단가는 우리나라 민요『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남북탁구협회들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 연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 회장 탁구협회 위원장
최원석 김득준

『호아호 아벨랑헤』
국제축구연맹회장 귀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쌍방 축구협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우리 축구협회들은 필요하다면 동 대회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데 따르는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 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과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 합의에 따라 단일팀의 명칭은 영어로 『KOREA』(약자 : KOR)로 하고, 선수단 단기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선수단 단가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남북축구협회들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 연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회장 축구협회 위원장
김우중 최룡해

『다토 하자』

아시아 축구연맹회장 귀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쌍방 축구협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우리 축구협회들은 필요하면 동 대회 단일팀 참가에 따르는 여러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 연맹 및 국제축구연맹과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 합의에 따라 단일팀의 명칭은 영어로 『KOREA』(약자 : KOR)로 하고, 선수단 단가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하며, 선수단 단가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으로 할 것입니다.

남북축구협회들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의 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귀

연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91년 2월 12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회장 축구협회 위원장
김 우 중 최 통 해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민족화합과 체육정신에 입각하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 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보여주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약자: KOR)로 한다.

2. 선수단 단기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선수 선발

- 가. 평가전을 기초로 하여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나. 평가전은 1991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완료하며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 다. 평가전은 서울과 평양 등 남북의 지역에서 각 1회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평가전 개최경비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5. 선수단 구성

- 가. 늦어도 1991년 5월 초까지 완료한다.
- 나. 국제축구연맹 규칙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다. 단장은 남측에서 맡는다.

라.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6. 선수 훈련

- 가. 남북을 왕래하며 1회씩 번갈아 실시한다.
- 나. 훈련에 참가할 쌍방 선수단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 다.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 참가시까지 실시한다.

7. 선수단 경비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8. 신변안전보장

훈련과 평가전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계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은 남과 북의 관계당국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한다.

9.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 가.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기본합의서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마.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의 남북왕래와 관련한 사항
- (4) 선수단 단복 및 대회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대회참가에 따르는 제반사항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10.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 문 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여 위 임 에 의 하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단 장 김 형 진

※ 제4차 남북체육회담(91.2.12, 판문점)에서 합의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9항 「단일팀 공동추진기구」규정에 의거,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 능

가.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가) 평가전을 기초로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나) 훈련참가 인원수(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 (다) 선수훈련 때의 수송숙식·의료·통신 등 제반 편의 사항
 - (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 (마) 선수훈련 때의 기자단 교환에 관한 사항
 - (바) 평가전과 선수훈련 때의 선수단 및 관계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선수단장 및 임원(감독·코치)선정에 관한 사항
 - (나) 행정요원(총무·섭외·공보 등), 의료요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단일팀으로의 대회 참가 확인통보 및 선수명단 제출에 관한 사항
 - (라) 단일팀으로의 대회 참가 확인통보후 선수단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마)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가·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바) 선수단의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3) 선수단 구성·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남북왕래와 관련한 사항
- (4)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5) 대회개최 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 (6)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나. 실무위원회는 단일팀의 참가 확인을 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 실무위원회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축구협회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나라 축구협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2. 구 성

가. 실무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나. 쌍방은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3. 운영

가. 실무위원회는 축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 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대회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 실무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가며 수시로 개최한다.

다.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합의제로 한다.

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마.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바.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4.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5.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12일

판문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위원장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북측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총식 단 장 김 형 진

※ 제4차 남북체육회담(91.2.12, 판문점)에서 합의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남북축구단일팀실무위원회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평가전에 의한 선수선발

- (1) 평가전은 남북선수 9명씩으로 구성된 2개의 혼성팀간에 실시한다.
- (2) 평가전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1회씩 공개리에 실시한다.
- (3) 1차 평가전은 1991년 5월 4일(토)에 서울에서, 2차 평가전은 1991년 5월 8일(수) 평양에서 각각 실시하되 평가전에 참가할 인원의 남북왕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5월 1일(수) : 북측선수단 서울도착

- 5월 2일(목)-3일(금) : 남북선수 합동훈련(2일간)
- 5월 4일(토) : 1차 평가전
- 5월 5일(일) : 남북선수단 서울에서 평양으로 함께 이동
- 5월 6일(월)-7일(화) : 남북선수 합동훈련(2일간)
- 5월 8일(수) : 2차 평가전
- 5월 9일(목) : 남측선수단 중 일부 서울귀환

(4) 평가전 때의 남북왕래인원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선 수 : 18명
- 임 원 : 7명
- 실 무 위 원 : 5명
- 지 원 인 원 : 15명
- 취재기자단 : 25명
- <총 계> 70명

(5) 평가전 심판은 주최측의 국제심판으로 한다.

(6) TV 실황중계는 상대측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초청측에서 화면과 음성을 제공한다.

(7) 선수선발

(가) 단일팀선수는 남북이

동수로 하되 각각 9명씩 선발한다.

(나) 선수선발은 1991년 5월 8일(수)까지 완료한다.

나. 강화훈련

(1) 강화훈련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평양에서의 강화훈련

- 5월 10일(금)-14일(화) : 평양에서 훈련(5일간)
- 5월 15일(수) : 단일팀 선수단 서울로 이동

(나) 서울에서의 강화훈련

- 5월 16일(목)-20일(월) : 서울에서 훈련(5일간)
- 5월 21일(화) : 서울출발 →파리경유→틀롱도착

(다) 프랑스에서의 강화훈련

- 5월 22일(수)-26일(일) : 틀롱에서 전지훈련
- 5월 27일(월)-6월 4일(화) : 틀롱 국제청소년축구대회참가
- 6월 5일(수) : 프랑스에서 포르투갈로 이동

(라) 포르투갈에서의 강화훈련
○ 6월 6일(목)-13일(목) : 포르투갈 현지적응훈련

(2) 강화훈련에 참가할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선 수 : 18명(남측 9명, 북측 9명)
- 단 장 : 1명(남측)
- 부단장 : 1명(북측)
- 감 독 : 1명(북측)
- 코 치 : 1명(남측)
- 총 무 : 2명(남측 1명, 북측 1명)
- 섭 외 : 2명(" , ")
- 공 보 : 2명(" , ")
- 의 료 : 2명(" , ")
- 협회이사 : 8명(남측 4명, 북측 4명)
- 전문가 : 6명(남측 3명, 북측 3명)
- 통 신 : 4명(남측 2명, 북측 2명)
- 연 락 : 4명(" , ")
- 수 행 : 8명(남측 4명, 북측 4명)
- 촬 영 : 2명(남측 1명, 북측 1명)

○ 기 자 : 10명(남측 5명, 북측 5명)

<총 계> 72명(남측 36명, 북측 36명)

다. 선수단이 남과 북에 체류하는 기간중의 수송, 숙식, 의료, 통신 등 제반편의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장한다.

라. 해외전지훈련 및 대회 현지적응훈련의 경우 수송, 숙식, 의료, 통신 등 제반편의사항은 남북쌍방 축구협회간에 별도로 협의·결정한다.

마. 평가전과 훈련때의 선수단 및 관계자의 활동은 초청측에서 보장한다.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선수단규모는 총 62명(남측 31명, 북측 3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 수 : 18명(남측 9명, 북측 9명)

(2) 임 원 : 30명(남측 15명, 북측 15명)

○ 단 장 : 1명(남측)

○ 부 단 장 : 1명(북측)

○ 감 독 : 1명(")

○ 코 치 : 1명(남측)

○ 총 무 : 2명(남측 1명, 북측 1명)

○ 공 보 : 2명(" , ")

○ 섭 외 : 2명(" , ")

○ 의 료 : 2명(" , ")

○ 통 역 : 2명(" , ")

○ 촬 영 : 2명(" , ")

○ 협회이사 : 8명(남측 4명, 북측 4명)

○ 전 문 가 : 6명(남측 3명, 북측 3명)

(3) 지원인원 : 14명(남측 7명, 북측 7명)

나. 국제축구연맹에 공식 등록할 7명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단 장 : 1명(남측)

○ 부 단 장 : 1명(북측)

○ 감 독 : 1명(")

○ 코 치 : 1명(남측)

○ 총 무 : 2명(남측 1명, 북측 1명)

○ 의 료 : 1명(남측)

<총 계> 7명(남측 4명, 북측 3명)

다. 선수단 관리는 단장이 책임지며 단장이 부재시에는 부단장이 대리한다.

라. 단일팀으로 대회참가확인 통보 및 선수명단 제출에 관한 사항

(1) 남북 축구협회 회장은 단일팀 참가 사실을 쌍방공동명의로 1991년 2월 28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각각 통보한다.

(2) 참가신청서 제출

(가) 남북쌍방 축구협회는 1991년 2월 28일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참가신청서는 남북쌍방 축구협회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각기 발송한다.

(다) 대회참가신청서 제출시 단일팀명칭, 단기, 단가, 유니폼 상하 및 스타킹의 색깔도 함께 통보한다.

(라) 유니폼 및 스타킹의 색깔은 붉은색과 흰색으로 한다.

(3) 선수명단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짜인 1991년 6월 4일 이전에 남북쌍방 축구협회 공동명의로 제출한다.

마. 단일팀구성후 선수단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 선발된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선발하여 충원한다.

(2) 그밖의 문제 발생시에는 사안별로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한다.

바.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 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1) 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 및 장소

(가) 결단식은 선수단의 남북 왕래 강화훈련이 끝난 직후 서울에서 실시한다.

(나) 해단식은 선수단의 귀환후 평양에서 실시한다.

(2) 결단식과 해단식의 방법은 주최측에서 정하되 세부

적인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사. 선수단 출발·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1) 선수단은 항공편으로 서울에서 출발한다.
- (2) 선수단은 항공편으로 평양에 귀환한다.
- (3) 선수단에 포함된 남측인원은 해단식이 끝난 후 판문점을 통과하여 귀환한다.

3. 선수단 구성 · 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남북왕래와 관련한 사항

가. 남북왕래 인원의 왕래절차, 휴대품 소지 등은 관례에 따른다.

나. 남북왕래 인원은 체류기간 중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다. 기타 남북왕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판문점 쌍방 적십자연락관간에 협의·결정한다.

4.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가. 단복은 북측에서 준비한다.

나. 운동복과 기타 운동용품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다. 평가전시 트레이닝복과 경기복은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준비한다.

라. 단일팀의 단복과 운동복 그리고 각종 장비에는 단일팀 단기표지외의 다른 표지는 할 수 없다. 단, 트레이닝복의 가슴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5. 대회 개최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대표를 참가시킨다.

6.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가. 단일팀의 단기는 북측에서, 단가(녹음테이프 및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1991년 3월 15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조편성 추첨회의에는 남북쌍방의 축구협회에서 각기 1명씩의 대표가 참석한다.

7.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6일

관 문 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회장의 축구협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축구단일팀실무위원회 축구유일팀실무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북측 공동위원장
 오 완 건 김 세 진

※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91.2.26)에서 합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남북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1) 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쌍방탁구협회에 배정된 인원을 쌍방 협회가 각기 선발한다.

- (2) 국제탁구연맹 선수랭킹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출전한다.

- (3) 각 종목(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 출전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여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4명)는 남측 2명, 북측 2명으로 구성한다.

- (나) 남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5명)는 남측 2명, 북측 3명으로 한다.

- (다) 개인단식전에는 상기 (1), (2)항 선수전원이 출전하되 쌍방은 선수순위를 명기한다.

- (라) 개인복식 및 혼합복식 전에는 쌍방이 각기 1명으로 구성·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각 종목별 단일팀선수 순위에 따르는 명단은 별지에 첨부한다.

나. 선수훈련

- (1) 선수훈련은 대회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한다.

- (2) 선수훈련시의 수송, 숙식, 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및 훈련장소는 쌍방 탁구협회 단일팀실사무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대회조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 (3)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 (4) 선수 및 임원들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선수단 구성

- 단 장 : 1명(북측)
- 고 문 : 4명(남북 각 2명)
- 총 감독 : 1명(남측)
- 감 독 : 2명(남자는 북측, 여자는 남측)
- 코 치 : 4명(남북 각 2명)
- 선 수 : 남자 12명
(남북 각 6명)
여자 10명
(남북 각 5명)

- 협회이사 : 2명(남북 각 1명)
- 전 문 가 : 2명(")
- 총 무 : 2명(")
- 섭 외 : 2명(")
- 공 보 : 2명(")
- 통 역 : 2명(")
- 의 료 : 2명(")
- 촬 영 : 2명(")
- 실무위원 : 6명(남북 각 3명)

<총 계> : 56명(남측 28명, 북측 28명)

나. 선수단 관리

- (1) 선수단관리는 단장이 책임지며 단장 부재시에는 총 감독이 단장을 대리한다.
- (2) 고문은 단장과 총감독의 자문역을 맡는다.
- (3) 총감독은 선수단의 제반 훈련과 경기를 총괄한다.
- (4) 감독은 코치와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경기를 집행하며 코치를 지도한다.
- (5) 코치는 담당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지도한다.
- (6) 탁구협회 이사는 감독 및 코치의 활동을 지원한다.

- (7) 전문가는 감독 및 코치의 자문에 응한다.
- (8) 총무는 선수단의 훈련과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을 관장·처리한다.
- (9) 섭외는 국제탁구연맹과 대회조직위원회 및 여타 선수단과의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 (10) 공보는 선수단 활동과 관련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 (11) 통역은 선수단의 통역업무를 담당한다.
- (12) 의료는 선수단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 (13) 촬영기사는 훈련 및 경기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한 촬영을 담당한다.

다. 참가신청서 제출

- (1) 대회참가신청서는 단일팀 실무위원회에서 선수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3통을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2통, 국제탁구연맹에 1통씩 각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참가신청서는 3월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라.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 (1) 선발된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선발하여 충원한다.
- (2) 그 이외의 문제발생시에는 사안별로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선수단의 결단식과 해단식은 하지 않는다.

바. 선수단의 출발, 귀환과 관련한 수송 및 경로

- (1) 선수단의 출발과 귀환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2) 선수단의 대회현지 도착 날짜는 3월 25일(월) 까지로 한다.

3. 선수단 단복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가. 단복과 운동복을 분리하여 단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개인지참용구(탁구채, 고무 등)는 각자 확보하고, 공동사용 용구(공, 고무풀, 수건 등)는 공동으로 구입한다.

다. 단일팀 단복과 운동복 등 행장품과 각종 장비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이외에 다른 표지는 할 수 없다. 단, 트레이닝복의 가슴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밑에 우리말로『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KOREA』를 새겨넣는다.

4.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필요한 대표 또는 대표단을 구성·참가시킨다.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가. 단일팀의 단기는 북측에서, 단가(녹음테이프 및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국제심판은 단일팀선수단 구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6.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 회장의 탁구협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 탁구유일팀실무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북측 공동위원장
박 성 인 장

<별첨>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선수명단**

1. 대회조직위원회에 제출할 선수순위 및 명단

순위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리 분 희
2	리 근 상	현 정 화
3	김 성 회	유 순 복
4	김 택 수	홍 차 옥
5	박 지 현	홍 순 화
6	김 국 철	한 혜 성
7	강 희 찬	안 회 숙
8	리 승 일	박 경 애
9	추 교 성	김 혜 영
10	김 명 준	박 해 정
11	이 철 승	
12	최 경 섭	

2. 단체전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리 분 회
2	리 근 상	현 정 화
3	김 성 회	유 순 복
4	김 택 수	홍 차 옥
5	김 국 철	

3. 개인단식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리 분 회
2	리 근 상	현 정 화
3	김 성 회	유 순 복
4	김 택 수	홍 차 옥
5	박 지 현	홍 순 화
6	김 국 철	한 혜 성
7	강 희 찬	안 회 숙
8	리 승 일	박 경 애
9	추 교 성	김 혜 영
10	김 명 준	박 해 정
11	이 명 철	

4. 개인복식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남규 - 김성회	현정화 - 리분회
2	김택수 - 김국철	홍차옥 - 유순복
3	강희찬 - 리승일	홍순화 - 한혜성
4	박지현 - 김명준	박경애 - 안희숙
5	추교성 - 최경섭	박해정 - 김혜영

5. 혼합복식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여
1	유 남 규 - 현 정 화	김 성 회 - 리 분 회
2	김 택 수 - 유 순 복	김 국 철 - 박 해 정
3	김 국 철 - 박 해 정	리 근 상 - 홍 순 화
4	리 승 일 - 홍 차 옥	강 희 찬 - 안 회 숙
5	리 승 일 - 안 회 숙	추 교 성 - 김 혜 영
6	강 희 찬 - 안 회 숙	이 명 철 - 박 해 정
7	추 교 성 - 김 혜 영	최 경 섭 - 한 혜 영
8	최 경 섭 - 한 혜 영	
9		
10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관련 「4자회담 의장성명」

199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4자평화회담 대표들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

금번 회담은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4자회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의장국에 의한 추첨결과 차기 회의 의장국을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순서로 한다.
2. 차기 본회담은 3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3. 1차 4자회담 의장국은 2차 4자회담 이전에 이 회담 준비를 위해 2월 중순 북경에서 특별소위원회를 소집한다.
4. 특별소위원회에서는 2차 4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본회담에서 심의하도록 건의한다.

4자 대표단은 모두 금번 회의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1997. 12. 10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이 1998년 10월 21-2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미합중국 4자 대표단은 진지한 자세로 유용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다.

금번 회담에서 4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4자는 분과위 작업에 지침이 될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도 채택하였다.

제4차 본회담은 1999년 1월 18일-22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차기 본회담의 조직관련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차석 대표급 준비회의가 본회담 개최 하루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본회담의 의장국은 직전 본회담의 종료시점부터 본회담 준비를 맡으며, 동 본회담 이전 개최되는 준비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한다.

4자대표단은 금번 회담을 지원해 준 스위스 정부측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1998. 10. 24

4자회담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1. 4자는 1998년 10월 21-24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에서 2개 분과위를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분과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를 각각 논의한다.
2. 각 분과위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본회담 대표중에서 1인이 맡는다. 각 대표단원의 숫자는 각측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각 대표단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 회의에 전문가들을 동반할 수 있다.

3. 분과위는 제4차 본회담시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하며, 그 이후부터 매 본회담시 마다 개최된다. 분과위는 각 본회담 종료이전 자신들의 작업결과를 본회담에 보고한다.

4. 본회담 의장국은 분과위 의장직도 수임한다.

*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1998.10.21-24, 제네바) 회의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엘. 갈루치 국무성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전민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 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전과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욕

* 1993. 6. 13 노동신문 1면 기사내용

미북 기본합의문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 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 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콘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국제 콘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학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콘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 10. 20. 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콘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증유로 공급된다.

<p>-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된다.</p> <p>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p> <p>-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p> <p>-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p> <p>-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p>	<p>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p> <p>-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p> <p>-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p> <p>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p> <p>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p> <p>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p> <p>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p>
---	--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1994. 10. 21

미 합 중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 식 대 표 수 식 대 표
미 합 중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본 부 대 사 외교부 제1부부장
로 버 트 겔 루 처 장 석 주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3월, 8월 및 10월 일련의 회담을 갖고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표명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국제 테러가 세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공식 정책 및 과거 북한 정부가 표명해 온 사안으로서 어떠한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함을 확인했다. 북한은 모든 테러 활동에 대한 조직 사주 조장 자금 조달 고무 또는 관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정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관한 공동의 우려를 토대로 양측은 국제 테러리즘

과의 투쟁에서 국제법 체제를 지지하고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리즘 퇴치조치에는 테러분자 또는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 또는 피신처를 포함한 방편을 제공하지 않고, 테러분자를 재판에 회부하며 민간 항공 및 해운의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싸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테러 방지에 관한 12개의 유엔협약 전부에서 서명 가입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미국과 북한은 국제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협력의 표시로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양측간의 돌출 현안을 해결할 생각이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북한측의 반대입장을 고려, 미국측은 북한이 미국 법률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북한측과 협력할 것이다.

2000. 10. 6

미·북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발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특사가 2000. 10. 9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

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하기 위해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 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 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 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 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 6. 11부터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 10. 21부 기본 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 신뢰를 이룩하며 주요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 무역전문가들의 호상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 합의문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 전쟁시기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 10. 6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최고급 상봉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북남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 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국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 10. 1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1월 17일

마이클 엠. 던 소장 박 립 수 대 좌
국제연합군측 대표 조선인민군측 대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12일

제스 엔. 솔리건 소장 리 찬 북 상 장
국제연합군측 대표 조선인민군측 대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총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的 水域으로서 그 한 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

한 부분의 한강河口的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 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 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 가.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

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對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ㄷ.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ㄱ.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ㄴ.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ㄷ.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 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幫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ㄹ.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ㅁ.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ㅂ.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

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

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p>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p> <p>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p> <p>23.</p> <p>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p> <p>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p>	<p>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p> <p>2. 책임과 권한</p> <p>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p> <p>25. 군사정전위원회는</p> <p>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p> <p>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p> <p>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p> <p>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p> <p>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p> <p>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p>
---	--

- 나.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郷私民 歸郷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 ㄷ.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ㄸ.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 기록의 부분은 매년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
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
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
부 부근에 설치한다.
-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
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
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
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
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
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
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
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

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
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
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
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
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없다.

- ㄷ.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
도하며 감독한다.
- ㄹ.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
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
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
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
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
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
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
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
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
 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 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 사.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 인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 대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 부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 강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 군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 청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 홍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 만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분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 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어떠한沮碍도 가지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종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

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7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한 小組은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전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

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자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다.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市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市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市民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市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市民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㉔.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㉕.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

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행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최고사령관사령관
미 육군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원수
마크 W. 클라크 김 일 성 팽 덕 희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 조선인민군 및
미 육군 중장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윌리엄 K. 해리슨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남북 합의서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02) 2076-1057
<http://dialogue.unikorea.go.kr>

인쇄처 웃고문화사 ☎(02)2267-3956
인쇄일 2007년 12월 7일
발행일 2007년 12월 7일

비 매 품

